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57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홍기원·한민수·손명수

이연희 • 이기헌 • 윤종군

윤후덕 · 김영배 · 송옥주

서미화 • 박홍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수소에너지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음.

위와 같은 추세에 따라 수소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조성이 핵심 방안으로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수소도시 조성을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운영·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소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수소도시를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워으로 활용하는 도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소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서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소도시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위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시행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 기술수준의

향상 및 수소도시의 국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수소도시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 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해당 기술을 시험시공하거나 우선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이용·보급을 확산하고 수소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 자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소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소도시"란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 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 2. "수소도시건설사업"이란 수소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수소도시기반시설
 - 나. 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의 전기 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
 - 다. 수소를 활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의 충전시설
 - 라. 수소를 활용하는 물류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시설
 - 마. 그 밖에 수소를 활용하여 가동하는 시설, 수소의 생산·저장 ·이송에 필요한 시설, 수소도시의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수소도시기반시설"이란 수소도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수소도시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 가.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설계·시공·운영 관 련 기술
 - 나. 가목의 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및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
- 5. "수소도시건설산업"이란 수소도시기반시설과 수소도시건설기술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및 사회적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산업으로서 수소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산업, 그 밖에 수소도시건 설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재원의 마련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안전한 수소도시 건설과 안정적인 수소도시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수소도시건설사업 및 수소도시건설기술 개발이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소도시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소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수소도시건설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전망 에 관한 사항
 - 3.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4.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 ·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5.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 6.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이용 · 보급 등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

- 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수소경제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 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⑦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소 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수소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제6조(수소도시건설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소도시건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있다.

-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소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3. 수소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4. 수소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5. 관계 행정기관 간 역할부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6. 수소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야 한다.
- ③ 기본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수립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한 의견 중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거쳐 수립·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 보고 및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자)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소도시의 효율적 건설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 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수소도시건설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도시건설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 3. 사업시행자
 - 4. 사업의 시행기간
 - 5. 사업의 시행방법
 -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 분담 방안을 포함한다)
 - 7.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8. 수소도시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및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실시계획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협의 및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결정·지정·협의·동의·신고 등(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이 공고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건축 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 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 8.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11.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 1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행위 허가
- 1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허가·신고 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1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 17.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 1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
-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 신고 또는 협의

- 2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2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 제1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수소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수소도시건설사업이 실 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인가·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시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를 해당 법률에 따라 받았을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 부장관은 수소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점용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및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과 허가의 기 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5조(수소도시기반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정하여진 수소도시기 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은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 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 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수소도시기반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수소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이하 "수소도시기반시설 관리주체"라 한다)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수소도시기 반시설 관리주체로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기반시설 관리주체에게 수소도시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보 및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수소도시기반시설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소도시건설기술 등의 지원

- 제17조(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도시건설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수소도시 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시행하는 수소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19조(연구·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 기술수준의 향상 및 수소도시의 국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 업자로 하여금 새로운 수소도시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 및 보 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국공립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5. 국내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하거나 예 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신기술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험시공 및 우선적용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시험시공 및 우선적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시범사업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이용 ·보급을 확산하고 수소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수소도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요건, 사업내용, 지원기준 등 대상지역 지정에 필요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도시 시범도시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1. 시범사업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2.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수소도시건설기술 등의 국외 진출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 및 지원 에 관한 사업
 - 2. 각국의 발주처 초청설명회·상담회·전시회의 개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업
 - 3.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외 진출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수소도시건설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에 관한 사업
 - 2. 수소도시건설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
 - 3. 수소도시건설기술 관련 국외 전문인력의 유치와 활용에 관한 사업
 - 4. 그 밖에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국제협력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장 보칙

-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수소도시건설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국가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수소도시건설사업에 관한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4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2. 공공기관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니거나 거 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도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에 따라 지정된 수소 도시 시범도시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